

(별지 제1호 서식)

2023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명 (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구입차종		구매대수		보조금 신청액	
주소 (등록주소지)					
연락처	(전화)	(휴대폰)	(이메일)		

2023년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 첨부서류 : 전기차 구매계약서 1부(출고예정일 포함),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
등기부등본, 우선순위대상 증빙서류(대상자에 한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BMW, 파워프라자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자동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가 아닌 경우(장기렌탈리스 제외)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시장 귀하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로부터 5년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2년 내 차량 판매 시에는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만18세이상 개인, 법인, 단체」 등에 매매 가능하며, 서울특별시의 사전 판매승인을 득해야 함
- ※ 의무운행기간(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은 매수자에게 인계
- 차량 최초등록일로부터 서울특별시에서 지켜야 할 운행기간(2년) 미준수(타 지자체 판매) 시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명시된 회수요율에 따라 시 보조금을 환수함

※ 전기화물차의 경우 1년이내 1만km 미운행 차량 판매시 지급된 보조금의 30%이상 환수

- 의무운행기간(5년) 내 등록말소(폐차 2년, 수출 5년) 시에는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등록을 말소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지원 자격이 취소됨
- 구매지원 대상자 선정일 이후 타 차종(차명 포함)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음. 다만,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차량 변경이 가능함
- 차량 등록 시 사용본거지를 '서울특별시'로 하여야 하며(단, 2대 이상을 구입하는 장기리스는 사용본거지 서울특별시 제한 제외),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가족)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 가능함(어린이통학차량은 예외, **개인사업자가 전기화물차 구매시 공동대표 등록 가능**)
- 동일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재지원제한기간(승용 2년, 승합2년, 화물 5년, 소급적용)이내 동일한 차종의 전기자동차 구매에 대한 중복지원이 불가함(단 법인이 초소형 승용차, 경형화물차, 초소형 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수급이 중단되거나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의 탈락이 있을 수 있으니 주소지 구청, 동 주민센터 및 관계기관에 확인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는 보조금 지급 기관으로 구매자와 차량 제작사 간의 계약과는 무관하며, 단순변심 등의 사유로 구매 신청 취소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변상책임은 구매자에게 부과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은 서울특별시가 해당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지급함.
-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과 서울특별시 해석 및 의견에 따름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 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시장 귀하